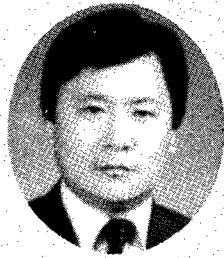


原子力損害賠償制度와 問題點



함 철 훈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전 세계 인으로 하여금 환경재해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후 세계 각국은 안전규제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기 위하여 자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조약의 하나인 비엔나조약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국경을 넘어 타국에 가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체제

를 정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 원자력손해 배상제도와 주요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原賠制度의 基本構造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기본법은 원자력손해 배상법(이하 「원배법」이라 한다)이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계약법」이라 한다)은 원배법의 부속법으로

서의 성격과 실질적으로 특별보험약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원배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기술하고자 한다.

원배법은 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을 이루고 있고, 배상처리에 관하여 국가의 개입을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법규 성격도 가지고 있다.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처리에 관한 제도이며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손해배상원칙을 수정한 예외적인 제도이다.

특별한 사유에 기인한 손해배상 또는 손해보상에 관하여 국가가 일반민사배상제도와는 다른 손해배상(보상)제도를 창설하여 관여하고 있는 사례는 국내외를 통하여 널리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다른 배상제도에는 볼 수 없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고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原子力損害賠償制度의 特徵

원배법은 제1조(목적)에서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호」와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 원자력사업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원배법 제3조)
- 원자력사업자의 구상권 제한(원배법 제4조)
- 손해배상조치의무(원배법 제5조)
- 정부의 조치(원배법 제14조)

原子力損害

원배법상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작용 또는 독성적작용(이의 섭취 또는 흡입에 의하여 인체에 중독 및 그 속발증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말한다. 다만,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 및 당해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는 제외된다(원배법 제2조제2항).

賠償責任者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자는 원자력사업자이다. 「원자력사업자」라 함은 다음의 자와 다음의 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원배법 제2조제3항).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원자로 설치자로부터 원자로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국내 원자력법상 발전용원자로에 대하여는 허가제도가 건설허가(원자력법 제11조)와 운영허가(원자력법 제21조)로 2원화 되어있다.

- 변환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 가공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 사용후핵연료처리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 개발기관 및 생산기관.

無過失責任 및 免責事由

無過失責任

현대 산업사회의 사고는 가해자가 고도의 과학기술을 구사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임에 비하여 피해자인 노동자나 일반시민은 기업의 생산과정이나 기술상의 문제를 거의 알 수 없으므로 과실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과실이 있더라도 그 입증의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있어서 원자력사업자에게는 무과실책임(원배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인정되고 있다.

免責事由

원자력손해가 이례적으로 심대한 천재, 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그런데 원자력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원자로의 운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이 쉽게 면책된다면 피해자 보호 측면이 무시되기 쉽다. 따라서 이례적으로 심대한 천재, 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만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원배법 제3조 제1항 단서).

無限責任主義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주요 국제조약(파리조약, 비엔나조약) 및 선진외국의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유한배상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원배법에서 원자력사업자에게 무한책임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원배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변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이 원자력사업자에게 무한책임을 인정하게 된 배경은 첫째, 일본의 지리적 여건이 육지로 연결되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사정과는 다르므로 제 외국의 손해배상제도와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으며, 둘째 일본은 유일한 원폭의 피폭국으로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한다는 것은 원배법 제정 당시 일본의 국민감정 또는 사회정세를 보아 적절하지 못하다는 신중론이 대두되어 책임제한의 문제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무한책

임원칙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責任의 集中 및 求償權의 制限

責任의 集中

원자력손해의 원인에 복수의 원자력사업자가 관계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을 명확하고도 용이하게 인식시킨다는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그들 중 배타적으로 책임을 질 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배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원자력사업자에게 책임을 집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현실적인 행위를 원자력사업자가 직접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은 그 원자로의 운전 등과 관계있는 원자력사업자만이 책임을 부담한다.

求償權의 制限

원배법 제4조에서는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를 제3조에 의하여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 등에 제공될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노무를 포함한다)의 제공(이하 「자재의 공급」이라 한다)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당해 자재의 공급을 한 자나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원배법 제

4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의 경우에 구상권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원배법 제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배법에서 원자력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첫째, 원자력관련산업계의 보호 및 손해배상조치의 핵심인 원자력손해배상책임의 누적화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운영이 진전됨에 따라 핵연료물질 또는 사용후연료 등을 운반하는 선박이나 차량이 다른 선박이나 차량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일반 제3자가 원자력손해의 발생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거액의 구상을 한다는 것은 일반 제3자에게는 매우 가혹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國家의 援助

원배법 제14조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의 원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원조를 행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 그 하나는 원자력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나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여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이에 대한 충분한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 또 하나는 원자력사업자가 면책되는 경

우이다(원배법 제3조 제1항 단서).

事業者 賠償能力 부족한 경우

이때에 정부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도록 되어 있다(원배법 제14조 제1항).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이러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다.

「필요한 원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조금의 지급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될 것이며 그러한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리용자 또는 각종 금융알선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손해가 손해배상조치액을 초과하고 동시에 원배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원조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援助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원배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해의 규모, 사고발생의 유형, 원자력사업자의 변제자력 및 손해발생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부가 행한다.

原子力事業者가 免責되는 경우

이것은 이례적으로 심대한 천재, 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損害賠償措置

원자력사업자에게 아무리 엄격한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더라도 그 이행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원자력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자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어떤 특별한 손해배상조치를 강구하게 되면, 손해배상의 확실하고도 신속한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被害者를 보호하고, 한편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는 우발적인 배상부담이 정상적

인 보험료 등의 지불로 처리된다는 의미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배법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과 같은 손해배상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원자로의 운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원배법 제5조). 원자력사업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원배법 제19조).

발생한 경우의 정부의 원조에 관한 것이다.

損害賠償措置의 內容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탁」이며(원배법 제5조 제2항), 이는 과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원배법 제6조 제1항).

보통 원자력사업자는 책임보험계약 + 보상계약으로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두가지의 계약을 일괄하여야 유효하기 때문에 이들 중 한 가지만의 단독계약으로는 손해배상조치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조치금액은 1공장 또는 1사업소마다 (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척마다) 90억원을 한도로 원자력시설의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다.

原子力損害賠償措置의 種類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은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서 원배법 제7조 제1항은 동계약의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동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은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전보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원

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원배법 제9조 제1항). 이는 일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책임보험으로서 전보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정부가 보상계약을 통하여 전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상계약에서 정하는 원자력손해의 범위, 보상료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원배법 제9조 제2항).

보상계약금액은 배상조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며(보상계약법 제5조), 원배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조치액과 동액이다(보상계약법시행령 제3조).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로서 보험계약 및 보상계약 이외의 조치를 하고 있을 때에는 당해 조치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 또는 다른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에는 그 다른 보상계약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보상계약법 제5조 단서).

책임보험에서 전보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서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보상계약법 제4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운전 등으로 인하여 생

긴 원자력손해는 보상계약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상운전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손해에는 해일, 홍수, 폭풍우 또는 낙뢰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전보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없었던 원자력손해, 다만 원자력손해의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 것에 한하고 있다.

供託

원자력사업자는 책임보험계약 및 보상계약의 체결에 갈음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배상조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원배법 제5조 제2항).

손해배상조치는 현실적으로 책임보험계약 및 보상계약의 체결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배상조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탁해야 할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탁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조치로서의 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장하는 지방법원에 금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하며(원배법 제11조), 이에 따라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등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

가증권이다(원배법시행령 제4조).

損害賠償措置의 原因行爲

원자력사업자가 손해배상조치를 하여야 할 행위는 원자로의 운전 등이다. 여기에서 「원자로의 운전 등」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 행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 저장 또는 폐기를 말한다(원배법 제2조 제1항).

그 내용을 상술하면 ① 원자로의 운전, ② 변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원배법시행령 제2조 제1호), ③ 가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원배법시행령 제2조 제2호), ④ 사용후연료처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원배법시행령 제2조 제3호), ⑤ 핵연료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원배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등이 있다.

損害賠償措置의 單位—敷地主義

손해배상조치를 강구하는 단위는 「1공장 또는 1사업소당」이다(원배법 제6조 제1항). 이것을 부지주의라고 한다.

예를들어 한곳의 사업소 내에서 2기 이상의 원자로를 설치하거나 원자로의 운전 및 가공을 행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조치는 하나이며, 사업소 내에 소재하는 모든 대상시설에 관한 손해배상조치액의 합계액이 손해배상조치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손해배상조치액 중 최대의 것이 당해 사업소의 손해배상조치액으로 된다.

원배법에서 부지주의를 채택한 것은 1공장 또는 1사업소 내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것이 어느 시설로부터 발생한 것인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부지에서 핵연료물질의 운반에 관하여는 그 성격상 부지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부지주의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는 그 부지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항상 전보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로서도 그 손해배상조치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조치액은 1공장 1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척)마다 90억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이다(원배법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원배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배상조치액을 별표로서 정하고 있다.

主要問題點

방사선의 피폭에 의한 손해의 문제는 어떠한 사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방사선을 쬐으로써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환경중에 방출된 방사성물질 등의 장기에 걸친 미량의 피폭에 의한 손

長期微量被曝의 形態

저준위 폐기물 매몰의 경우

이행개념은 방사성핵종이 인간 환경에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하수, 지표수, 우물, 식물연쇄, 공기, 가축의 사육과 같은 형태를 통한 이행이 예상되는 경우이다.

인간의 행위에 따른 개념은 인간의 능동적 행위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개념이다. 이것은 예컨대 처분장 적지가 무관리상태로 된 후 도로공사에 수반하는 굴착, 가

옥 및 공작물의 건설에 수반하는 굴착, 거주, 농경, 과실수를 심어 그 열매를 먹는 등과 같은 행위가 고려된다.

高準位 廢棄物의 埋沒 경우

이행개념(지하수, 지표수, 식물연쇄)은 다만 처분방법의 안전기준상 적어도 1,000년간은 이행의 문제는 제기될 수 없다고 생각되나, 실제로 인간환경에 도달한다면 수만년 이후라 생각된다. 인간의 행위에 따른 개념은 처분장 부근의 광산물 자원의 채취, 고고학적 흥미에 기한 발굴 등이다.

해의 발생이라고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長期微量被曝問題

이 문제는 원자력시설에서 대규모 사고의 발생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물질의 누출에 의하여도 원자력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장기미량피폭에 의한 손해에 있어서도 인과관계의 문제로서 공해피해와 유사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특히 손해발생의 원인이 장기에 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의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의 도달가능성이 확대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이 특정의 原子力施設에 특유한 것으로 특정

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정도의 증명이 매우 곤란하다고 하는 점이 거론될 수 있다.

더욱이 이 경우 어떤 양의 방사선을 어느정도 피폭하면 어떠한 방사선장해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과학적인 메카니즘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후발적으로 방사선에 의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건강피해형태의 비특이성으로 보아 원인물질의 발병에 대한 인과관계, 후발증 특히 유전에 대한 영향에의 손해범위의 인정 등에 곤란한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원배법은 원자력사업자였던 자가 사업종료 후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씨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나 손해발생의

원인으로 된 방사성물질을 누출한 사업자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추구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장기미량피폭에 있어서는 이 밖에 불법행위의 발생시기와 시효(제척기간)의 문제가 있다.

「間接損害」의 취급

原賠法의 一般原則

원배법은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원배법 제3조 제1항).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오염된 것의 방사선의 작용 또는 독성적작용(이의 섭취 또는 흡입에 의하여 인체에 중독 및 그 속발증을 미치는 것)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말한다」(원배법 제2조 제2항).

원자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로부터 초래된 손해에는 단순한 기계적 손해도 있을 수 있다(예컨대 경계벽이 붕괴하여 통행인이 상해를 입는 등). 그러나 이들은 일반 공장재해에 의한 손해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배법상은 원자로의 운전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모두 포함되며 소위 직접손해, 간접손해의 구별은 없다. 결국 원자로의 운전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避難費用

대규모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대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낭설 소문) 주변주인이 피난한 경우

① 낭설 등으로 피난한 경우에 실제로 어떠한 원자력손해가 발생하여 당해 제삼자가 피난하여 그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당초의 피난비용은 원자로의 운전 등과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당해 비용은 배상되며 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전보된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일어난 원자력손해의 성질이 책임보험계약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성질의 것도 있을 때에는 보상계약에 의한 전보대상이 된다고 본다.

② 낭설 등으로 피난한 후에 실제로 어떠한 원자력손해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제삼자에 관하

여는 피난하지 않아도 당해 손해를 받지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를 피하도록 피난한 때에는 다르며 당해 원자력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은 통상의 경우 낮은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상태로 당해 원자력손해와 당초의 피난비용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당해 비용이 배상되는가 어떤가는 의문이다.

③ 낭설 등으로 피난한 후에 실제로 어떠한 원자력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손해배상 밖이며 손해배상조치에 의한 전보의 문제 밖이다.

원자력시설에 있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난한 경우

① 당해 제삼자가 피난하지 않았으면 원자력손해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피난비용과 당해 원자력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서 당해 비용은 배상되며 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전보된다.

② 당해 제삼자가 피난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자력손해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초의 피난비용과 당해 원자력사고와의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어떤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때 어느 범위까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인가(그 손해는 배상이 될 수 있는가)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때의 피해범위의 예견가능성의 곤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피난비용은 본래적으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밖이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있다고 인정되는 손해는 모두 원배법에 의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원자력손해로 되어 있으며 원자로의 운전 등에 기인하는 원자력손해에는 그 운전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간접적손해 즉 휴업이익의 상실, 대피명령에 의한 대피에 따른 손실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본다.

責任保險契約에서의 취급

이 보험에서 전보되는 손해라 함은 피보험자(즉 원자력사업자)가 보험증권기재의 시설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사람의 신체에 장해(사망을 포함)를 주거나 또는 물건을 멸실 훼손 오손한 것을 이유로 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다. 피보험자가 부담한 손해배상책임이 이 손해보험에서 전보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당해 시설에서 발생한 어떤 「사고」에 기인하여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비정상적인 하자가 있는 상태(예컨대 손괴, 고장, 조작의 과오 등)가 당해시설에서 발생하여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제삼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 책임보험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고 운전도 소정의 기준에 따라 시종 정상적인 상태로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주변주인이 피해를 제소하는 경우에는 소위 정상운전에 의한 손해로서 이 보험의 전보대상 밖으로

된다. 이것은 보상계약으로 전보되는 것이다.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이 보험의 대상인 시설에 있어서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제삼자가 실제로 신체상해 또는 물질의 멸실, 훼손, 오손을 입었음을 이유로하는 책임이어야 한다. 환언하면 사고의 결과 실제로 방사능오염을 받은 주변의 지가가 하락한 경우 그 부근의 관광수입이 감소한 경우의 손해는 보험에 의한 전보범위 밖이다. 또한 이점에 관하여는 보상계약으로도 전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立法論

책임보험 그 중에서도 강제책임보험의 목적은 피해자의 보호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보호가 주된 목적이고 기업의 건전한 육성은 부차적인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의 보호는 물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유형의 강제배상책임보험인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도 다른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원배법은 그 제정당시 일본의 원배법을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조가 일본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지리적, 사회적 여건 및 원자력산업의 발전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앞으로의 원배법 개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原子力事業者의 無限責任制度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절대무한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원배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및 국제조약을 살펴볼 때 대부분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오늘날 일반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그에 따른 재해에 대하여 절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한다면 기업의 건전한 육성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특히 원자력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수행하고 있다. 비록 정부가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자력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유한책임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損害賠償措置額의 引上

손해배상조치액(책임보험계약금액 및 보상계약금액)은 각각

90억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며, 현재 그 금액은 60억원을 최고한도로 하고 있는데(원배법시행령 제3조) 이를 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원배법상의 책임보험은 위험의 사회적분산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장래에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한 배상책임을 예비하는 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둘째 우리나라의 원전은 대부분이 인구가 밀집하고 있는 대도시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엄청난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원자력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배상조치액의 인상과 함께 국제적 재보험을 통하여 위험을 더욱 합리적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경을 넘은 원자력손해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손해에 관한 국제조약인 「파리조약」이나 「비엔나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국제간의 원자력손해에 관한 법체도가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국경을 넘은 원자력손해에 대한 국내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미량피폭문제, 피난비용문제 및 손해배상의 우선지급순위문제 등은 앞으로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